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기대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으며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자원순환, 폐기물, 순환자원, 순환이용, 자원순환사업, 자원순환시설 등 용어가 지금까지는 자원순환기본법 2조를 따랐으나, 폐기물관리법, 자원순환기본법, 에너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며 반영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